

#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2021학년도 등교 및 원격수업 계획

고창초등학교

## I 추진 근거

### 교육과정 관련

-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3조제2항(교육과정 등), 제24조제2항(수업 등)
-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48조제4항(수업 운영방법 등)
- 초·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(교육부 고시 제2020-225호)
- 2021학년도 초·중·고·특수학교 등 원격수업 운영 기준(교육부 교육 과정정책과, 2021.1.28.)
- 2021년 초등(특수)학교 원격수업 세부 운영 지침 및 출결, 평가, 학생부 기록 가이드 라인 안내(학교교육과-1993, 2021.2.9.)

### 출결, 학생평가, 학생부 기재 관련

-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5조(학교생활기록)
-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규칙」 제21조부터 제25조
- 「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」(교육부 훈령 제365호)

#### **[교육부 훈령 제365호 [별표8] (출결상황관리 등)]**

4. 소속 학교에서 실시한 원격수업(방송·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) 수강학생 처리

가. **학교의 장**이 교육상 필요에 따라 소속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(목) 및 창의적 체험활동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4조 제3항 제1호의 원격수업으로 실시한 경우 **출결 및 평가, 학교생활기록 작성 등의 처리 방법은 교육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**

-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알림(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-563, 2021.1.26.)

### 감염병 예방 관리 관련

-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제2차 개정판(교육부, 2016.12.)
-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지침(지자체용)(94판)(중앙방역대책본부, 2020.12.6.)
- 유·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(제3판)(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-10757, 2020.12.11.)
-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(중대본, 2020.11.1.)

## II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

### □ 기본원칙

#### ○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학사운영 방안

구분	1단계	1.5단계	2단계	2.5단계	3단계
	생활방역	지역적 유행 단계		전국적 유행 단계	
<b>등교원칙 (도교육청)</b> <small>전체 학생 수 400명 초과 학교**</small>	밀집도 2/3 원칙, 조정 및 전면등교 가능	밀집도 2/3 <b>준수</b>	밀집도 1/3 원칙(고교2/3) <b>(초·중·고교 2/3 운영 가능)</b>	밀집도 1/3 <b>준수</b>	원격수업 전환
	(초) 3~6학년 학생 수 기준 밀집도 원칙			(초) 1~6학년 학생 수 기준	
밀집도 기준 예외	①	<b>(~3단계까지)</b> 돌봄 및 기초학력 지원 필요 학생, 중도입국학생 대상 별도 대면지도 실시의 경우			
	②	<b>(~2단계까지)</b> 학교 규모를 불문하고 유,초등 1,2학년 전면등교			*특수학교(급) : 3단계에서도 1:1 또는 1:2 학교, 가정 대면교육 병행 가능
	③	<b>(~2.5단계까지 특수학교는 등교수업 원칙)</b> ※ 일반 학교 내 특수학급은 소속 학교의 학사일정에 따라 운영			
소규모 학교***	<b>(~2.5단계까지 등교수업 원칙)</b> 전체 학생 수 300명 이하 학교, 전체 학생 수 400명 이하이면서 학급당 평균 학생 수 25명 이하인 학교				

- 등교수업 시 학교 내 밀집도 및 학생 간 밀접 접촉 최소화 방안 마련

#### ▷ 사회적 거리두기 1.5~2단계(2/3 등교 시)

학 년	수업 방식
1~3학년	매일 등교 수업
4~6학년	홀짝반 격일제 등교 수업 (예) 월 4,6학년 홀수반, 5학년 짝수반 등교, 화 4,6학년 짝수반, 5학년 홀수반 등교
- 3~6학년 대상 긴급돌봄교실 운영 - 방과후학교 해당 학년 등교 시 운영	

#### ▷ 사회적 거리두기 2.5단계(1/3 등교 시)

학 년	수업 방식
1~6학년	주1~2회 등교 : 3일마다 등교 (월 1,4학년 등교, 화 2,6학년 등교, 수 3,5학년 등교..)
- 1~2학년 대상 긴급돌봄교실 운영(3~6학년은 학교 상황에 따라 운영 여부 결정) - 방과후학교 해당 학년 등교 시 운영	

- 밀집도 최소화 : 출입구, 특별실, 급식실, 복도, 화장실 등 공동이용 장소의 밀집도 최소화
  - 학년별·학급별 등하교·수업·급식 시간 등 분리 운영
  - 등하교 출입구, 급식실 이동 경로 등 분리 운영
  - 건물이 여럿인 경우 해당학급이 있는 건물 내에서만 활동 권장
    - ※ 확진자 발생시 전체 확산 가능성 최소화
- (학사일정) 2021학년도 학사일정은 **개학연기 없이 3월에 시작\***하며, **법정 기준수업일수\*\***를 준수하여 정상운영 추진
  - \* 개학 시기의 지역 감염병 상황에 따라 개학 형태(등교 또는 원격) 추후 결정
  - \*\* 초·중·고·특수학교 수업일수는 **매 학년 190일 이상**, 유치원 매년 180일 이상
- 중단 없는 교육과정 운영 : 원격수업 → 등교 및 원격수업 병행 → 확진자 발생시 원격수업 체제 전환 → 등교수업 재개 등의 전 기간을 통해 모든 학생의 중단 없는 교육과정 운영
- 개인 위생 교육: 조종례, 수업 전후 등을 활용하여 책상 및 개인물품 소독, 마스크 착용, 손씻기, 기침 예절 등 코로나19 예방행동 수칙 등 상시 교육 실시

#### □ 수업 시간표 운영

- 등교수업 및 원격 수업 시간표는 학급별 기초 시간표로 운영
- 원격수업 시 주제구성, 학습자료 준비, 공동콘텐츠 제작 등은 동학년 교사공동체에서 협의 및 제작

#### □ 수업시간 운영

- 학생의 건강, 수업권 및 휴식권을 보장한 수업시간 운영
  - 학생 밀집도 및 이격거리 확보, 방역 상황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학년 내 반별 격일제로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병행 운영
  - 학교구성원(학생, 학부모, 교직원, 학운위 심의 등)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과정 정상 운영과 기초학력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시

- (기준) 수업 시간 한 차시 기준 시량은 40분이 원칙임. 블록타임제, 유연한 쉬는 시간 적용 등 교육과정 운영의 융통성을 살려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실질적인 교수·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

1~2학년			3~4학년			5~6학년		
수업유형	교시	시간	수업유형	교시	시간	수업유형	교시	시간
등교		9:00	등교		9:00	등교		9:00
대면수업	1교시	9:00~10:20	대면수업	1교시	9:00~10:20	대면수업	1교시	9:00~10:20
대면수업	2교시		대면수업	2교시		대면수업	2교시	
쉬는시간		10:20~10:30	쉬는시간		10:20~10:30	쉬는시간		10:20~10:30
대면수업	3교시	10:30~11:50	대면수업	3교시	10:30~11:10	대면수업	3교시	10:30~11:50
대면수업	4교시		대면수업	4교시		대면수업	4교시	
급식		11:50~12:40	급식		11:10~11:50	쉬는시간		11:50~12:00
대면수업	5교시	12:40~13:20	대면수업	4교시	11:50~13:10	대면수업	5교시	12:00~12:40
대면수업	5교시		대면수업	5교시		대면수업	6교시	
하교		13:20	쉬는시간		13:10~13:20	급식		12:40~13:20
			대면수업	6교시	13:20~14:00	대면수업	6교시	13:20~14:00
			하교		14:00	하교		14:0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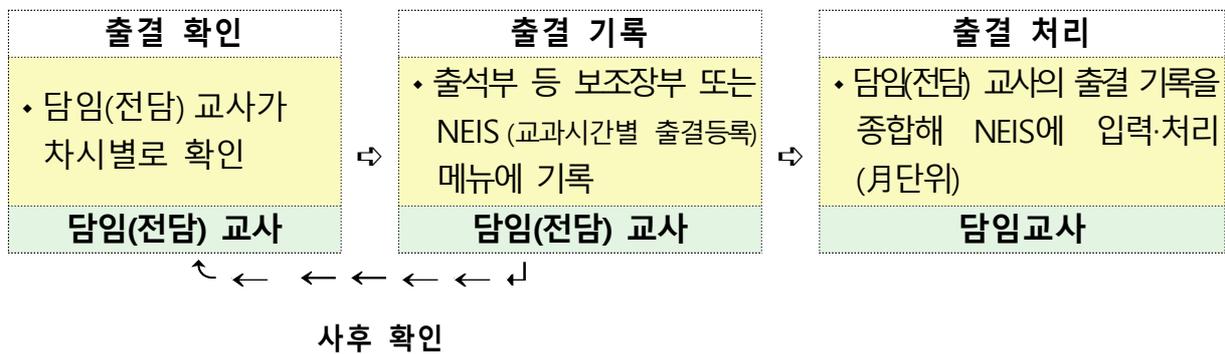
- \* 쉬는 시간 화장실 사용 : 전 5분 - 흡수번호 // 후 5분 - 짝수번호  
수업시간 중 이용을 원하는 학생은 화장실 이용 허용
- \* 하교 시간 : 흡수 번호 - 수업 끝난 후 즉시 하교 // 짝수 번호 - 5분 후 하교

### III 출결 관리

#### 【 원격수업 】

##### 1 기본 원칙

#### 【 원격수업 중 출결 확인 및 처리 절차 】



- (출결 확인) 원칙적으로 당일 교과별 차시 단위로 실시하되, 3일 (수업일 기준) 내 최종 출결 확인

-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당일(해당 시간)이 원칙이며, 접속불량 등으로 대체학습을 제공한 경우 3일 내 최종 확인
- (출결 기록) **담임교사(전담교사)**가 실시간 또는 사후 출석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차시별로 출결 보조장부(출석부) 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(NEIS) 메뉴에 출석 또는 결석(결과)으로 기록
- **담임교사와 전담교사**가 미 수강 학생 수강 독려
- (출결 처리) **담임교사(전담교사)**의 출결 기록(출석부 등)과 학생이 제출한 결석 사유 증빙자료 확인 후 담임교사가 1주일(7일) 단위로 종합하여 월(月)단위 출결(마감) 처리\* 가능

**【등교수업 기간 중 원격수업 인정 기준】**(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-6154, 2020.8.19.)

- 학급단위\* 이상으로 원격수업을 실시한 경우에 한해 출석(수업)으로 인정
- \* 밀집도 최소화를 위해 학급을 분반하여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는 경우 포함 (예: 홀수 번호 원격수업, 짝수번호 등교수업)
- 등교수업 운영 기간에 개인단위 등교 중지 등으로 개별학생에게 온라인 등으로 제공한 대체학습은 원격수업으로 미 인정(출석인정 결석 처리)
- 방역 관련 법령에 따른 등교중지 대상학생이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 운영 중 희망에 따라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에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출석(수업)으로 인정

- (실시간 출석 확인) 1교시 수업 및 마지막 교시 수업 참여를 실시간 확인하는 것으로 운영

**【수업참여 확인】**

- (방식) 실시간 화상 프로그램 또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(SNS) 등을 활용
- (내용) 원격수업 준비도, 건강상태, 당일 원격수업 내용 개요, 전달사항 등을 주제로 소통
- (미참여 학생) 전화 또는 개별 사회 관계망 서비스(SNS) 등을 통해 전달할 내용을 안내하고 특이사항 파악

- (유의사항) 등교수업 기간 중에는 ‘등교중지 및 고위험군 학생’ 이외 **‘가정학습 신청 및 해외 체류 학생이 등교일에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\*을 수강한 경우, 원격수업 수강 내역으로 출결 처리 불가**
- \* 학교에서 운영 중인 학급단위(밀집도 최소화를 위한 분반 포함) 이상 원격수업이 있더라도 해당 학생의 ‘등교일’에는 원격수업 수강 내역으로 출결처리 불가

○ 실시간 쌍방향 수업

- (확인·인정 방법) 교사가 플랫폼 화면, 실시간 댓글(플랫폼, 별도 학급방) 등을 활용해 학생의 출석(참여)여부 확인(인정)
- (대체 확인 방법) 접속 불량 등의 사유로 실시간 접속이 불가능한 학생은 대체학습을 제시(당일)하여 그 이행결과를 근거로 출석 확인·인정
  - ※ SNS,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접속 불가 사실 확인 후 대체학습을 부여한 학생에 한하여 출석 처리 가능

○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

- (확인·인정 방법) 학습관리시스템(LMS)을 활용해 학습시작일, 진도율, 학습시간 등을 기준으로 출석 확인·인정
  - ※ '출결 처리'를 위한 이수 기준은 원격수업관리위원회 등에서 결정(미충족 시 '결석(결과)' 처리)
  - ※ (참고-이수기준) 예) e-학습터: 60%

- (대체 확인 방법) 학습관리시스템(LMS)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과제물 제출, SNS, 유선전화, 문자메시지 등 활용

○ 과제 수행 중심 수업

- (확인·인정 방법) LMS를 활용한 접속 기록, 과제 수행 결과물 제출 여부를 기준으로 출석 확인·인정
- (기타) 과제 인정 기준(인정 수준, 분량)은 학교 여건에 따라 별도 마련, 학생의 수준을 감안한 과제 제시

○ 기타 유형 수업

- (확인·인정 방법) 학교장이 정한 출석 인정 기준, 출석 인정 증빙 자료, 제출 기한에 따라 확인 및 기록

### 3 학생 관리

- (대체학습 대상 학생) 학생의 장애, 물리적 환경 등에 따라 원격 수업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\*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공한 대체 학습 이행 결과\*\*를 근거로 출석 처리 가능

\* 장애학생, 지리적·물리적 환경에 의해 인터넷 및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학생 등

\*\* (예시) 서면 학습자료 및 과제 제공, 등교 시 학부모 학습 확인서 등과 함께 제출

※ 기한 내 원격수업을 수강하지 않은 학생, 교외 체험활동 신청에 따른 출석 인정 결

석자는 대체학습을 통해 해당 수업의 출석인정 처리가 불가능함

- (등교중지 대상 학생\*) 방역 관련 법령에 따른 등교중지 대상 학생이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 운영 중 희망에 따라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,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출석(수업)으로 인정

\* 확진 받은 학생, 격리통지 받은 학생(동거인이 격리대상자인 경우 포함), 코로나 19 의심 증상 학생

※ 그 외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결석한 날부터 기한(5일 또는 학교장이 정한 기간) 내 증빙서류 제출 시 '질병 결석' 처리

- (장기결석 학생 관리) 학교장이 정한 기간 이상 장기결석 시 ① 유선 확인 및 출석 독려, ②소재 확인 불가 시 교육정보시스템(NEIS) 미인정 결석 등록 및 수사의뢰

※ 근거 :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27조의2 ②항 5목 및 ③항, 제92조의2 ②항

## 【 등교수업 】

❖ 교육부훈령 제365호 및 2021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출결처리하되, 코로나19로 인한 결석생의 경우 본 지침에 따름

※ 코로나19로 인해 학교·학년·학급 단위로 등교가 중지될 경우, 즉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여 운영(학생 등교 전 등교중지 시 당일부터, 일과 중 발생 시 다음 날부터)하고, 원격수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결 처리

※ 기타 미등교 등으로 장기결석 시, 출결상황 특기사항에 '코로나19로 미등교(00일)'로 기재 (출석인정결석 처리 기간은 장기결석에 해당하지 않음)

- (등교중지 대상 학생) 특정 학생이 「학교보건법」 제8조, 「학교보건법시행령」 제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, '출석인정결석' 처리

※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, 해당일은 '출석인정 조퇴' 처리

## 【등교중지 대상 학생】

대상	등교 중지 기간	출결증빙 자료
확진 받은 학생	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입원치료통지서*</li> <li>*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을 시행규칙 [별지 제 22호 서식]</li> </ul>
격리 통지 받은 학생	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격리통지서</li> </ul>
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*	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b>동거인의 격리통지서</b></li> </ul>
	<p>&lt;유의사항&gt;</p> <p>- 다만,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 하는 경우, 학생은 등교 가능</p>	
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	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b>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</b> (예: 문자 통지 사본 등)</li> </ul>
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(임상 증상 발현 학생)	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(호전) 시까지	<p><b>[코로나19 검사 결과 '음성'인 경우]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(예: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(발급 가능 시), 문자 통지 사본 등)</li> </ul> <p><b>[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]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, 학부모의견서 등</li> <li>※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(발급 가능 시 권장)</li> <li>※ <b>평가 기간 중에는 선별진료소 등의 방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수 확인</b> (예: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, 진료확인서, 콜센터 또는 보건소와 통화 사실 증빙자료 등)</li> <li>☞ <b>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결 처리와 별개로 성적처리는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별도 처리 가능</b></li> </ul>
<p>※ 임상증상 발현 시 '유·초·중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(제3판)'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·문의(해당 지침 5, 9, 40페이지 참고)</p>	<p>※ 참고사항</p> <p>▶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(방역지침 40쪽 참고)</p>	

※ 등교중지 기준은 감염예방 관리지침에 의거하며, 상단의 표는 등교중지 처리된 학생의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임

## 【 대상 학생별 정의 】

- ※ **코로나19 대응 및 감염예방 관리 지침**(중대본, 교육부)이 개정되는 경우, **사례별 정의 및 등교중지 관련 세부사항**(기간, 등교재개 요건 등)은 **해당 지침을 준수**하고, 등교중지 기간은 '출석인정결석' 처리
- ※ **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**: 발열, 기침, 호흡곤란, 오한, 근육통, 두통, 인후통, 후각·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

- **확진 받은 학생**: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(코로나19)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학생
- **격리 통지 받은 학생**: 해외에서 입국하였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보건소에서 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학생
- **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**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 중 해외에서 입국하였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보건소에서 격리통지서를 받아 자가격리 중인 사람이 있는 학생
  - ※ 해외 입국자 중 '격리면제 대상자'의 동거인은 등교중지 대상이 아니며, 세부적인 대상자는 '유·초·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(제3판)' 참조
- **임상증상 발현학생**: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학생
  - ※ 임상증상 발현 학생의 관리, 등교중지, 등교재개 등은 '유·초·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(제3판)'에 따라 실시

### 【 코로나19 임상증상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】

유·초·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(제3판) [참고 9]

- **(기본원칙)**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**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·검사 받기**
    - 검사결과 **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**,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**호전되면 다음날 등교**
      - ※ 귀가 후 3~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
      - ※ (예시) 해열제 복용하여 6.7.(일)에 열이 내려가고, 6.8.(월) 등교 전까지 해열제 추가 복용 없는 상황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등교 가능
  - **(예외)**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19 **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** 해당 증상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 **코로나19 국내 발생(1.20.) 이전 이환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 (또는 진단서)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**
    -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전 해당 질환 이환 여부를 **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선별진료소 진료 (방문) 내역(진단검사 실시여부 무관)과 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소견서(또는 진단서)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**
      - ※ 의사의 진찰 결과 타인에게 전파되는 다른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질환 완치 시까지 등교중지
- ※ 출처: **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지침(9-4판), 유·초·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(제3판)**

- (고위험군학생) 의사의 진단서(소견서)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(폐질환, 만성심혈관질환, 당뇨, 신장질환, 만성간질환, 악성종양, 면역저하자 등) 및 장애\*를 가진 학생의 경우, '출석인정 결석\*\*' 또는 '질병결석\*\*\*' 처리
  - \* 보건복지부가 발급한 '장애복지카드' 소지자에 한하며, 장애복지카드를 증빙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
  - \*\*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([참고1] 참조)가 "심각, 경계"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
  - \*\*\*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"관심, 주의"단계이며, 학부모(보호자)가 학교에 사전 연락 (전화 또는 문자 등)한 경우
  - ※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(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)에 고위험군(기저질환 및 민감군)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(소견서)를 제출해야 하며,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(소견서)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
  - ※ 등교하지 않는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
- (기타 미등교학생)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'기타결석\*' 처리
  - \*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"심각, 경계"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
  - ※ "심각, 경계" 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) 신청 시 '출석인정 결석 처리 가능(16쪽 참고)
  - ※ (유의사항)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·졸업 불가,
- (예방접종)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해 검진 기관을 방문하는 학생은 접종 당일에 대해 출석 인정 처리
  - 등교수업 및 원격수업에 모두 해당되며, 원격수업(쌍방향 실시간 수업 제외)은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 수강하는 경우 출석 처리 가능
  - ※ 단, 학교의 평가 기간(시간)은 미인정 결석(결시) 처리함
  - ※ 증빙서류: 학생이 제출한 예방접종확인서 또는 방문확인서

## IV 교수·학습 운영

### 기본원칙

#### ○ 사회적 거리두기 1, 2단계

- (교과 수업)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연계한 혼합 수업을 활성화하여, 학생의 활동 및 학습내용 등에 대한 교사별 학생 개인 피드백 강화
- 등교수업 시 토의·토론 등의 소통이나 실험·실습 등의 기자재 활용이 불가피한 경우, 비말이나 접촉 등에 의한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 후 수업 실시
- (방역 강화) 학교 내 이동 수업,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지양하되 수업시 수업 전후 교실 방역 및 물품 소독 등 관리 철저

#### ○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

-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 시, 다양한 원격수업 유형을 활용하여 학생 참여 중심의 토의·토론, 프로젝트 등 다양한 교과 수업 실시

#### ○ 밀접 접촉 최소화 : 학습 도구 등의 공동 사용을 자제하고, 학생간의 밀접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유의

- 일과시간 중에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, 학급내에서 학생간 최대 거리를 확보하여 책상을 배치함
- 개인활동 중심으로 수업을 구성하고 모둠활동을 지양,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염 우려가 없도록 노력함

#### ○ 등교수업 이후 확진자 발생 시 기 수립된 원격수업 운영 계획으로 대체함

### 원격수업 운영 방안

- (원칙) 대면수업에 준하는 원격수업, 혼합수업으로 학생 배움중심 교수·학습 지속

- 수업시간에 일정한 공간(교실, 특별실)에서 원격수업 운영
- 체감할 수 있는 소통 활성화(학생, 학부모), 학생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 노력
- 학력격차 완화를 위해 피드백 강화 및 학생 맞춤형 지도
- (수업인정) 학교에서 교육상 필요\*한 경우 자율적으로 운영하되, 학년별·교과별 총 수업시간 전부를 원격수업을 통해 이수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.
  - \* 초·중·등교육법 제23조1항에 따라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
- (수업량) 원격수업 한차시 기준 시량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40분을 원칙으로 함
  - ※ 단, 전체학생 수 400명 초과 학교에서 당일 대면·원격수업을 병행하게 될 경우에 방역과 급식 시차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에만 5분 이내 감축 한시적 허용(별도 안내 시까지)
- (수업시간 탄력적 운영) 블러타임제 등 탄력적으로 원격수업 시간 운영
- (수업유형) 실시간 쌍방향 수업,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, 과제 수행 중심 수업 등
- (수업방식) 모든 원격수업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 및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지는 수업\* 등 학생의 수업 참여 및 교사·학생 간 상호작용이 활성화 되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
  - \* 실시간 쌍방향, 쌍방향+콘텐츠 활용, 쌍방향+과제중심 수업 등의 혼합수업은 물론 콘텐츠 활용+실시간채팅 등을 통해 학생과 소통하는 수업 포함

구분	세부 모형 예시
1. 원격수업 간 혼합	• 콘텐츠 활용수업(예습) +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
	•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+ 과제수행형 원격수업
	• 콘텐츠 활용수업+과제수행형 원격수업+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
2. 원격수업 + 대면수업간 혼합	• 원격수업(예습학습) + 대면수업(피드백, 프로젝트학습 등) 모형
	• 대면수업(핵심개념학습) + 원격수업(확인과제학습.피드백) 모형

·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 서비스 : 공공 LMS 플랫폼(전북e학습터 등), 또는 민간 서비스 활용 (Zoom, 구글 Meet, MS팀즈 등)

· 실시간 화상수업이 어려운 학생의 경우 차시에 해당하는 콘텐츠 및 학습과제 제공

- (실시간 출석 확인) 1교시 수업 및 마지막 교시 수업 참여를 실시간 확인하는 것으로 운영
- (피드백 강화) 원격수업의 특성을 고려하되, 학습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른 수업을 제공하여야 하며, 성취도 달성을 위해 학생 개인별 다양한 피드백\* 제공
  - 단편적 강의 위주의 콘텐츠 학습만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며, 학업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수업 중 피드백 (상시 소통) 강화
- \* 학습 수준 진단, 수업 참여도·태도, 학습 성취 정도, 응원·격려, 건강상태 확인 등
  - 실시간 피드백: 실시간 화상시스템 활용, 퀴즈형 온라인 수업도구 활용 등
  - 과제형 피드백: 제출한 학습과제물을 보고 미성취 부분에 대한 맞춤형 피드백, 온라인에 축적된 학생 과제물을 통한 학습 성장 과정 피드백 등
- (저작권) 학교에서는 원격교육으로 운영되는 홈페이지 등에 '수업 목적임'을 명시하고 학생에게 저작물을 다른 사이트에 공유하지 않도록 교육
- (초등 저학년) 초등학교 1~2학년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**등교수업을 기본으로 하되**, 원격수업 운영시 학습발달단계, 학습도움 필요 정도를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원격수업 운영
  - 체감할 수 있는 소통 활성화(학생, 학부모), 학생 자기주도적 학습능력향상으로 학생의 성장 조력
  - 스마트기기 보유 여부에 따라 기기를 대여하여 실시간 쌍방향 수업 여건을 조성하고, 학습꾸러미\* 제공
- \* 학교에서 제공하는 학습자료, 기본 학습 준비물(색연필 등), 권장도서, 기본 놀잇감, 학부모 안내 자료 등

## □ 교과 활동

### ○ 등교수업에서의 교과 활동

- 교과별 수업 : 개인활동 중심으로 수업하되, 토의·토론 등의 소통이나 실험·실습 등의 기자재 활용이 불가피한 경우, 비말이나 접촉 등에 의한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 후 수업 실시
- 학생 이동 최소화 : 학교내 이동 수업,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시 수업 전·후 교실 방역 및 물품 소독 등 관리 철저
- 공동 이용시설 사용 최소화 : 도서관, 과학실, 특별실 이용을 최소화하고 학급 내 활동으로 대체함
- 학습 결손 최소화 : 원격수업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학습더딤 학생의 학습결손에 대한 보충학습 기초학력 진단-보정 시스템 (<https://basic.jbedu.kr/>) 등을 활용하여 실시

### ○ 원격수업에서의 교과 활동

- 담임교사 및 전담교사 주도 학습관리 실시(학년별 계획에 의거함)
-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단위 수업시간에 준하는 적정 수업량을 확보하도록 노력
- 온라인 접근 불가 학생에게 주간 학습 계획에 따른 학습지를 공하고 동영상 및 사진, 화상통화를 통해 담임교사 확인 후 등교일에 피드백 제공

## □ 창의적 체험활동

### ○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기준

구분	1 ~ 2.5단계	3단계
자율활동	• 교내 방송시설 활용, 불가피한 대면활동은 학교장 승인 후 추진	• 수학여행, 수련활동 불가
동아리활동	• 방역지침 준수 후 동아리 활동 • 가급적 학교 외 활동 자제, 외부 강사 출입 시 학교장 승인 및 발열검사 등	• 동아리 활동 전면 원격 전환
봉사활동	• 비대면·비접촉 봉사활동 • 고입 봉사활동 시수 관련, 감축기조 유지 등 필요 시 적정 조정	• 외부기관 방문대면 실내활동 금지 • 비대면·비접촉 봉사활동
진로활동	• 숙박형 프로그램 자제	• 전면 원격 진로교육 활동

- **자율활동** :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연계한 학생 활동 실시
  - 가급적 교내 방송시설을 활용하고, 대면 활동이 불가피할 경우 참석 인원, 행사공간, 진행방식 등 안전여부를 검토하여 학교장 승인 후 추진
  - 대규모 단체 활동 및 대내외 행사를 가급적 지양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방역조치를 이행 후 최소한의 인원만 제한적 참여
    - ※ 수학여행, 수련활동, 학습발표회 등은 감염병 위기단계 ‘심각’, ‘경계’ 인 경우 지양
- **동아리활동** :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 후 실시 가능
  - 밀폐된 공간내 활동 자제, 실습이나 집단 활동의 경우 생활방역지침을 준수하고 동아리활동 장소에 대한 방역 대책 마련
  - 가급적 외부활동을 자제하고, 외부강사 출입시 학교장의 사전 승인 및 발열 검사 등을 실시하여 안전 확보
- **봉사활동**
  - 외부 기관 방문 봉사활동 자제 및 학년 전체가 동시에 참여하는 학교차원의 실내봉사활동 지양, 비대면 봉사활동 활용 가능
- **진로활동** : 진로활동 중 진로체험학습은 체험 방법 및 유형\*, 참석인원, 체험공간 등에 대한 안전여부를 검토하여 학교장 승인 후 추진
  - 원격수업으로 진로교육 활동을 추진할 경우, 진로교육 플랫폼 활용
- **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 시**
  - (공통) 비대면(원격수업)이 가능한 활동(동아리활동, 진로활동 등)에 한해 원격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실시

□ 기타

- **교외체험학습**
  -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“심각, 경계” 단계인 경우에 한해, 교외체험 학습의 승인 사유에 “가정학습” 을 포함
  -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,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, 감염병 위기경보 “심각, 경계”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그 기간은 공휴일, 방학,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

- “가정학습” 시 사전 신청서(학습계획서) 제출, 승인 및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

**[교외체험학습 관련 지침 추가]**

- ▶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“심각, 경계”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(허가) 사유에 “가정학습”을 포함
- ※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,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함

**○ 학생 상담**

- 전문상담교사는 상담 수요조사 또는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파악하여 상담 지원
- 불안, 우울 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의 경우 위(Wee) 센터,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외부 전문상담기관 연계
- 격리상담을 이유로 따돌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급 구성원을 대상으로 배려·공감 교육 실시

**○ 소통강화**

- (소통강화) 원격수업 시 실시간 조·종례 등을 통해 비대면 환경에서 교사-학생, 학생 간 소통을 강화하여 사회성 함양 및 정서발달 도모

**V 학생평가**

기본원칙

-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에 대해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지필평가, 수행평가 등을 통해 직접 관찰·확인하고, 평가의 객관성·공정성·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
  - ※ 지필평가는 등교하여 실시
- 평가(지필 및 수행평가)의 방법, 횟수 등은 도교육청 지침 및 고창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결정함

학생평가

- (평가계획 수립 및 안내) 등교중지 등으로 인한 결시생의 성적처리

방안을 마련하고, 학생·학부모에게 철저한 사전 안내 필요

- 정상적인 학생평가가 어려울 경우 평가일정 조정, 평가횟수 조정 등을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후 학교장이 판단

※ 수립(변경)된 평가 계획은 평가 실시 전에 학생 및 학부모에게 사전 안내

- (결시생 성적처리)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결시생에 대한 관찰 가능 기회 확보 방안 등을 추가하여 처리

[ 결시생 성적처리 ]

※ 등교중지 등으로 인한 결시생의 처리 방법을 마련하고, 학생 및 학부모에게 사전 안내

(예) ① 등교 후 평가 실시 등      ② 원격수업 내용 기재

- (횟수 조정) 평가 횟수(학기당 영역별 1회 이상 권장)등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후 학교장이 조정
- (시기 분산) 학생의 부담 완화를 위해 단기간 내 여러 과목의 수행 평가가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 실시
- (안전 확보) 학생 간 밀접접촉을 유발하는 모둠형 수행평가, 비말 발생이 우려되는 평가는 지양하되, 상시 마스크 착용, 방역 강화 등 조치
- 휴업 및 원격수업이 장기화 되어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경우\*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, 교과 세특은 수업 과정에서 관찰한 내용을 포함하여 기재 가능

\* **원격수업일수가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2가 넘는 경우** 도교육청, 교육지원청, 학교가 협의하여 평가 미실시 결정(학교 임의로 평가미실시 결정하지 않도록 유의)

※※ 본 계획은 향후 코로나19 감염증 상황 변화에 따라, 추가 공문에 의거 수정 및 보완되어 변경 운영할 수 있음.